수원시 공고 제2026 - 2490호

2027년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

수원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6년 11월 6일

수 원 시 장

1. 근무조건

○ 근무기간 : **2027년 1월 1일 ~ 12월 31일 (12개월)**

○ 근무시간**(*12월은 예산 상황에 따라 정상근무 또는 단축근무로 변동 될 수 있음)**

- **전일제 : 주 5일(40시간)** / (12월 단축근무 시) 주 5일(37.5시간)
- **시간제 : 주 20시간** / (12월 단축근무 시) 주 19시간

○ 근무내용 : 행정도우미, 업무지원, 카페보조, 시설관리 등

○ 근 무 지 : 공공기관, 사회복지시설, 비영리민간단체 등

○ 보 수

- **전일제 : 금2,236,300원** / (12월 단축근무 시)금2,097,200원
- **시간제 : 금1,123,500원** / (12월 단축근무 시)금1,059,300원

*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이며, 보험금에 따라 실수령액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2. 모집분야 및 기간

○ **모집인원 : 129명(전일제 82명, 시간제 47명)**

○ 모집분야 : 붙임 참조

○ 공고기간 : 2026. 11. 6.(금) ~ 11. 20.(금)

○ **접수기간 : 2026. 11. 16.(월) ~ 11. 20.(금) 18:00까지**

○ **접수방법 :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**

○ **제출서류(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)**

① (공통) **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[서식1]** (**희망직무 기재**) 1부.

② (공통) **참여자 정보 확인서[서식2]**(확인사항 유무 작성) 1부.

※ 장애등록여부, 장기요양등급판정 여부,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, 미취업 상태 여부,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, 적극 구직활동 여부(필요시)

③ (공통) **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목적 외 이용·제3자 제공 안내[서식3]** 1부.

※ 신청자의 '장애인등록여부' 및 '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'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조회

④ (해당자에 한함) 아래 표(▼) 해당자는 서류 제출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증빙서류</th></tr>
<tr><td>① 자격증 소지자</td><td>- 관련 자격증 사본 1부
※ 컴퓨터활용능력, ITQ자격증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, 사회복지사, 장애인재활상담사</td></tr>
<tr><td>② 졸업예정자</td><td>-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
※ 졸업예정증명서, 재학증명서 등</td></tr>
<tr><td>③ 여성가장</td><td>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 colspan="2">첨 부 서 류</th></tr>
<tr><td>공통사항</td><td colspan="2">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</td></tr>
<tr><td rowspan="10">선택사항</td><td>부모 부양시</td><td>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
(의사진단서, 생계급여수급자 등)</td></tr>
<tr><td>가출 . 행방불명</td><td>실종신고서</td></tr>
<tr><td>장애</td><td>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
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</td></tr>
<tr><td>질병으로 요양 중</td><td>의사의 진단서</td></tr>
<tr><td>군복무</td><td>복무확인서</td></tr>
<tr><td>학교 재학</td><td>재학증명서</td></tr>
<tr><td>교도소 입소</td><td>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</td></tr>
<tr><td>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
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</td><td>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
장의 확인서</td></tr>
<tr><td>이혼소송 제기</td><td>이혼소송확인서</td></tr>
<tr><td>기타 가족 생계 부양</td><td>통·반장의 확인서(검토)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④ 취업지원대상자</td><td>-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
※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,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1조,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제35조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,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2조,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</td></tr>
<tr><td>⑤ 장애인일자리
우수참여자</td><td>- 상장사본(보건복지부장관상,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)
- 상장사본(장애인일자리관련 시·도지사 및 시·군·구청장 표창)
※ 최근 3년(24~26년)이내 사용가능</td></tr>
</table>

[여성가장]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* 하는 여성

① 미혼여성이거나,
② 기혼여성이나 이혼·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거나
③ 신체·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*하는 여성

* 18세 미만(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)인 자녀를 양육,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, 장애·질병이 있는 동거가족(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)을 부양

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
○ **신청자격 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**

○ 선발방법 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

[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]

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)
※ 단, 신청 당시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 등』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(ex. 2026. 12. 31.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 신청 가능)
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
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 단체의 대표, 임직원
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※ 단,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를 제출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
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사람
※ 단,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*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
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사람

○ (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) 다음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참여 가능
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만65세 이상인 사람(1962. 1. 2. 이전 출생자)

4. 기타 참고사항

○ **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(1년) 동안 '적극적인 구직 활동'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(구직활동 증명서류 제출 필수)**

○ **사업유형 변경(중도 종료 후 재입사) 시 1년 만근 시에도 퇴직금 미지급**

예) 일반형일자리 시간제(1.1.~5.31.) → 전일제(6.1.~12.31.)로 변경한 경우,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

○ **사업유형 변경 시 연가 발생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**

○ **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.**

* **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**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
 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"성범죄"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)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)해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 **「장애인복지법」**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(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력을 포함한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이하 "취업제한기간"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"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")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 **「사회복지사업법」** 제35조의2(종사자)
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. 다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

* **「노인복지법」**제39조의17(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
 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・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이하 "취업제한기간"이라 한다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(이하 "노인관련기관"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"취업제한명령"이라 한다)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

○ **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**

[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]

*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(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)
  - 24세 이하(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에 해당하는 수급(권)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
  -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
  -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, 북한이탈주민,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% 공제
  - 25세 ~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% 공제

○ **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**

*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'직업적응훈련, 직업훈련'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(노동부 차별개선과-2468)

○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

[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]

*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

- 이 고지는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
-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12월 22일부터 2027년 6월 22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-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]를 작성하여 당사로 현장접수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  *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
-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7년 6월 22일(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)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「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」에 따라 보관·관리될 예정입니다.

○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등 서식은 **수원특례시 홈페이지(https://www.suwon.go.kr/)** 고시·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수원특례시 홈페이지 > 수원소식 > 공고/고시/입법예고 > 「2027년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」 검색

○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**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**합니다.

○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 (☎031-5191-25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모집 직무 및 선발인원 1부.

2.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등 서식 1부. 끝.

붙임 **(일반형일자리)모집 직무 및 선발인원**

※ 지원요건 및 우대조건 필수 확인

□ 전일제

(단위: 명)

연번	수행직무	지원요건 및 우대조건	선발인원	비 고
계			**82**	
1	행정도우미	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	39	구·동행정복지센터 근무
2	복지서비스지원요원 (행정업무보조)	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, 수어가능자(1명)	19	구·동행정복지센터 외 근무
3	사서보조	주말근무 및 분류기호 이해 가능자	7	도서관 근무
4	업무지원	-	12	프로그램보조, 안내데스크, 급식보조, 주방업무 등
5	시설관리	기본체력 필요	1	환경미화, 시설관리 등
6	카페보조	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	4	카페 근무

□ 시간제

(단위: 명)

연번	수행직무	지원요건 및 우대조건	선발인원	비 고
계			**47**	
1	행정도우미	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	1	구·동행정복지센터 근무
2	복지서비스지원요원 (행정업무보조)	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	8	구·동행정복지센터 외 근무
3	사서보조	주말근무 및 분류기호 이해가능자	4	도서관 근무
4	업무지원	-	10	주방업무, 프로그램보조, 우편물분류, 폐화환정리 등
5	시설관리	기본체력 필요	10	환경미화, 시설관리 등
6	카페보조	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	8	카페 근무
7	직업재활시설지원요원	직업재활시설 이용자만 가능	6	-

[서식 1]

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

졸 업 예 정 자		□ 특수학교(급)	□ 대학교	접 수 번 호	*oo동 – 001*
일자리 유형 (택1)	□ 일반형	1순위	□ 전일제 □ 시간제	2순위	□ 전일제 □ 시간제
	□ 복지	1순위	*(수행기관명)*	2순위	*(수행기관명)*
희 망 직 무		① (관련자격증– 있음□ 없음□ / 관련근무경험– 있음□ 없음□)			
		② (관련자격증– 있음□ 없음□ / 관련근무경험– 있음□ 없음□)			
성 명			연락처	[본인]	
				[보호자]	
				[이메일]	
주민등록번호		– (세)		성별	□ 남 □ 여
주 소					
소 득 수 준		□ 기초생활수급자 □ 차상위계층 □ 비해당			
여 성 가 장		□ 해당 □ 비해당		취업지원대상자	□ 해당 □ 비해당
장 애 유 형				장 애 정 도	□ 심한 장애 □ 심하지 않은 장애
특수교육대상자		□ 특수교육 대상자 *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참여자만 해당		이동수단	□ 도보 □ 대중교통 □ 자가용 □ 기타
주 요 이 력 사 항					
최 종 학 력		□ 무학 □ 초졸 □ 중졸 □ 고졸 □ 전문대졸 □ 대졸 이상			
주요경력사항		(~)			
		(~)			
직업훈련	기 관 명				
	훈련기간	~		~	
	훈련직종				
자 격 면 허		1) 2)	전 산 능 력	□ 문서작성 □ 표계산 □ 인터넷 □ 기타( )	
사업자등록유무		□ 유 □ 무	취 업 상 태	□ 취업상태 □ 미취업상태 * 타 재정일자리(공공근로, 자활, 노인일자리 등 정부재정일자리)참여 여부	
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해당여부				□ 해당 □ 비해당	
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		□ 유 □ 무 (참여기간: 일자리사업명:)			
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		□ 유 □ 무 * 최근 3년 이내('24년~26년) * 보건복지부장관상,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, . 장애인일자리관련 시·도지사 및 시·군·구청장 표창 사본			

위와 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.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,
상기 개인정보 중 일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됨에 동의합니다.

2026. 11. 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수 원 시 장 귀하

붙임 1. 참여자 정보 확인서[서식2] 1부.
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목적 외 이용·제3자 제공 안내(필수)[서식3] 1부.
3. 그 외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(모집 공고문 참고) 각 1부.

[서식 2]

참여자 정보 확인서

참여자 성명:_____

연 락 처:_____

구분	확인사항	
사업자등록증 유무	□ 있음	□ 없음
장애인등록 여부	□ 있음	□ 없음
미취업 상태 여부	□ 취업	□ 미취업
임직원 겸임 여부*	□ 해당	□ 미해당

*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단체의 대표, 임직원 겸임 여부

※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, 선발이 취소되거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즉시 중단 조치될 수 있음을 확인함

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

년 월 일

수원시장 귀하

[서식 3]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목적 외 이용·제3자 제공 안내·동의서

수원시는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·이용 및 목적 외 이용·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.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

[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]

· 본인식별절차에 이용
·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, 지원 등 사업운영
·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(장애유무 및 장애정도, 사업자등록여부조회,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,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정보,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)
·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
·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·확대를 위한 근거자료
·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
·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
·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
·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취업정보 제공

※ 위와 같이 수집·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.

[수집·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]

· 성명, 연락처, e-mail주소, 성별, 주소, 소득수준, 학력, 경력, 직업훈련, 자격면허, 전산능력,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기간, 보수
· 은행계좌(통장사본), 근무상황부, 보수대장, 참여조건합의서

[근거 법령]

○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(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)

[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]

○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(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)

2.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

[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]
· 본인식별절차에 이용
·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, 지원 등 사업운영
·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(장애유무 및 장애정도, 사업자등록여부조회,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,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정보,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)
·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
·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·확대를 위한 근거자료
·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
·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
·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
·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취업정보 제공
※ 위와 같이 수집·이용되는 고유식별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.

[수집·이용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]
·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등

[근거 법령]
·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[고유식별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]
○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(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)

[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]
○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.

3.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

[민감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]
· 본인식별절차에 이용
·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, 지원 등 사업운영
·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(장애유무 및 장애정도, 사업자등록여부조회,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,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정보,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)
·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
·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·확대를 위한 근거자료
·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
·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
·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
·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취업정보 제공
※ 위와 같이 수집·이용되는 민감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.

[수집·이용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]
·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(복지카드),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여부,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

[근거 법령]
○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[민감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]
○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(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)

[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]
○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.

4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지

제공처	목적	항 목	기 간	근 거
지자체 (시도,시군구)	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·감독	참여인원수 직무유형, 근무기관, 근무상태 등 비식별 통계자료	위탁사업 운영 종료 시까지	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,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(법령상 관리·감독 목적)
한국 장애인 개발원	· 참여자 취업정보 제공 및 정보제공에 대한 결과확인	· 성명, 성별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(휴대전화번호), e-mail 주소, 학교, 학년, 최종학력, 참여기관, 사업유형, 직무유형, 장애유형, 장애정도, 기초생활 수급여부	·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	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
사회보장 정보원	· 참여자변동 정보 조회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, 급여금액, 급여지급일, 사업참여일, 참여종료일, 사업시작일, 사업종료일	· 사회보장정보원 내부지침에 의거 2년간 보유 후 개인정보 파기	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
한국고용 정보원	·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조회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, 급여금액, 급여지급일, 사업참여일, 참여종료일, 중도종료일, 중도종료사유, 근무처명, 근무처, 사업자등록번호, 성별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, 우편번호, 취약계층정보	· 한국고용정보원 내부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(요청시 파기)	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2항,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3항
경찰서	· 범죄경력조회	· 성명, 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, 성별, 주소, 연락처 수집된 개인정보	· 경찰청 내부지침에 의거 경력조회 개인정보 보유	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,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
한국장애인 고용공단	· 범부처 취업지원시스템 서비스 의뢰자 서비스 결과	· 주민등록번호, 서비스제공시작일자, 서비스제공종료일자, 희망지원 처리상태코드	·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부 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 기간 준영구	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,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
※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.				

본인은 본 “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목적외 이용·제3자 제공 안내·동의서”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습니다.

2026년 월 일

성 명: (서명 또는 인)